

채용목표제 운영기준

가. 비수도권 지역인재* 채용목표제 * 근거 :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구 분	내 용
적용대상	▪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 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목표비율	▪ 각 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5%
적용방법	▪ 적용단위 : 일반, 사회형평, 보훈 각 분야 ▪ 각 전형 합격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이 35%에 미달하는 경우 - 선발 예정인원의 35%에 도달할 때까지, - 유역별 미달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, - 최저 합격점수의 -5점 범위 내(가점 포함)에 있는 불합격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차순위자 추가합격. 단, 과락자는 제외 1) 추가합격 대상자가 동점자일 경우 모두 추가합격 2) 전형점수, 미달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3)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